

울산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1가단1091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현, 조은지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김익환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9. 7. 10.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30. 및 2019. 2. 27.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에게 에게 합계 2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변제기 2019. 3. 5., 이자 2019. 2. 27.부터 연 24%,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이를 기초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9년제10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식회사 C는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과 주식회사 C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이 법원 G)를 신청하여 배당기일에서 139,754,588원을 배당받았으나, 2021. 3. 25. 기준 234,683,768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C는 울산 동구 H건물 I호, J호(이하 2세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7. 1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K조합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주식회사 C는 2019. 7. 10.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감사이며 D과는 부부 사이였다(2021. 6. 7. 협의이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2019. 7. 10. 주식회사 C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할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주식회사 C가 대출금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은 그 금원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로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은 피고가 D의 요구에 따라 2018. 9. 14. 주식회사 C에 대여한 109,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한 행위는 주식회사 C가 여러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를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운영 및 재정 상황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